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58호 2025. 10. 30.(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사곡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30호)
- 예천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31호)

공 고

-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44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고 시

예천군 고시 제 2025 - 130호

사곡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곡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0. 29.

예 천 군



1. 사업의 명칭 : 사곡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사곡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위생·안전·인프라, 주택정비, 마을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
3. 위 치 :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일원
4. 사 업 비 : 2,163백만원(국비 1,547, 지방비 533, 자부담 83)
5. 주요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 마을안길정비, 위험축대 정비,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개량,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공용주차장 조성
 - 주택정비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빈집 철거, 노후 집수리 귀농 귀촌의 집 조성
 - 마을환경개선 : 마을담장 정비, 마을쉼터 정비, 방치 시설 철거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4년 ~ 2027년(4년간)

예천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예 천 군 수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25. 10. 29.
- 공동주택 명칭 및 지정 범위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범위
예천군 제5호	경북도청신도시우방아이유셀센트럴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229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5. 10. 29. ~ 2026. 1. 28. (3개월)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6. 1. 29.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팀(☎054-650-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1. 조 례 명 :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체허가 대상 기준을 인근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기준 완화(안 제12조제1항~제2항)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 특정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 : (현행) 건축물 높이의 1.5배 반경 ⇨ (개정) 건축물 높이 이내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현행) 8m 이상 ⇨ (개정) 20m 이상

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수수료 기준 신설(안 제13조)

-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현장점검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 대가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자 함.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예천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 화 : 054-650-6351, Fax 054-650-6359

- 전자우편 : erinyes@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전화 : 054-650-63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당 건축물 높이의 1.5배 반경 내에”를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이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8m 이상의 도로”를 “20m이상의 도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 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u>해당 건 축물 높이의 1.5배 반경 내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u>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 -----해당 건 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 이 이내에----- ----- -----.
1. ~ 3.(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 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u>8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u>	② ----- ----- 20m 이상의 -----.
<신 설>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 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 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